



서울중앙지법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정근)는 2021. 1. 8. 위안부 피해자 배○○ 등 총 12인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일본국이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 원고들의 청구 요지

원고들은 일본제국이 침략전쟁 중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였던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들로서, 일본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침략전쟁 수행을 위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위안부’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위안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식민지로 점령 중이었던 한반도에 거주하던 원고들을 유괴하거나 납치하여 한반도 밖으로 강제 이동시켰고, 원고들을 위안소에 감금한 채로 상시적 폭력, 고문, 성폭행에 노출시켰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통칭한다)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위자료의 일부로서 각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 판결 요지

가. 재판권 유무(국가면제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 재판권 있음)

- 국가면제(또는 주권면제)는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이다. 19세기 후반부터 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상대적 주권면제 이론이 대두되었다.
-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하여는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라 주권적 행위이다.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2. 2. 3.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에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은 무력충돌 상황에서 국가의 무장병력 및 관련 기관에 의한 개인의 생명, 건강, 재산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절차에서도 적용된다’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도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당시 일본제국에 의하여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하여 자행된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
- 그 근거로서,
 - 1)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 UN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재판받을 권리는 다른 실체적 기본권과 더불어 충분히 보호되고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 2) 국가면제는 절차적 요건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이 불충분함으로 인해 실체법상의 권리나 질서가 침해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3) 국가면제 이론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고,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서 계속하여 수정되고 있다.

4) 1969년 체결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에 의하면, 국제법규에도 상위 규범인 ‘절대규범’ 과 하위규범 사이에 구별이 있으며, 하위규범은 절대규범을 이탈하면 아니 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절대규범의 예로서 UN 국제법 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협약 초안’ 해설에서 거시한 노예제 및 노예무역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5) 피고가 된 국가가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하였을 경우까지도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로도 출된다. 즉,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인도에 반하는 중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한 여러 국제협약에 위반됨에도 이를 제재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미국 등의 법원에 여러 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 청구권협정과 201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또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하였다. 협상력,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개인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송 외에 구체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요원하다.

6) 국가면제 이론은 주권국가를 존중하고 함부로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절대규범(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하여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면제 이론 뒤에 숨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성된 것은 아니다.

나.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에 대한 판단 : 관할권 있음

- 불법행위의 일부가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점, 물적 증거는 대부분 소실되었고, 기초 증거자료는 대부분 수집되어 일본에서의 현지 증거조사 등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점,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들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일본제국은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군인들의 사기 진작 및 민원 발생의 저감, 효율적 통솔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른바 ‘위안부’를 관리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고, 이를 제도화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군과 국가기관에서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워 인력을 동원, 확보하였고,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안소’를 운영하였다. 10대 초중반에서 20세 남짓에 불과하여 미성년이거나 갓 성년이 된 원고들은 ‘위안부’로 동원된 이후 일본제국의 조직적이고 직·간접적인 통제 하에 강제로 하루에도 수 십 차례 일본군인들의 성적인 행위의 대상이 되었다. 원고들은 가혹한 성행위로 인한 상해, 성병, 원치 않은 임신, 안정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산부인과 치료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했고, 상시적인 폭력에 노출되었으며, 제대로 된 의식주를 보장받지 못했다. 원고들은 최소한의 자유도 제압당하여 감시 하에 생활 하였다. 종전 이후에도 ‘위안부’였다는 전력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두고두고 큰 정신적 상처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후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 이는 당시 일본제국이 비준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재판소 현장에서 처벌하기로 정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적어도 원고들에 대하여 각 100,000,000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원고들이 1인당 각 100,000,000원만을 일부청구로 청구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넘은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함).

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소멸하지 아니함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양국 간의 1956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끝]

[→ HOME](#)